

충청북도 주민자치활동 지원 조례안

---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손윤목

# 충청북도 주민자치활동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6년 1월 1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월 1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2. 제정이유

-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의식제고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의 활동 지원을 통해 원활한 국·도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.

## 3. 주요내용

- 조례제정 목적 (안 제1조)
  - 충청북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주민자치활동 지원 등
-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 활성화 단체의 정의 (안 제2조)
- 사업의 범위,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, 결산보고, 지도·감독, 포상 등 (안 제3조 ~ 안 제7조)

#### 4. 검토의견

- 금번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의식 제고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의 활동 지원을 통해 원활한 도정 업무를 추진할 목적으로 하는 것임.
-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,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전국의 읍·면·동에 설치된 것으로 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과 함께 여유공간을 활용해 주민의 문화, 복지, 편익시설 및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참여를 통해 자치의식과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.
-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에 있는 센터의 교류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화나 상호 정보교류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주민자치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충청북도 차원에서도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는 주된 업무는 각 시군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충청북도는 주민자치센터가 프로그램 운영 효율화나 센터간 상호 정보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광역 차원에서 지원을 하여야 지방자치의 의의에 부합한다고 하겠음.
- 비용추계서를 보면 역량강화와 사기진작 사업에 연간 1억 1천 5백만원을 추계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필요함.

붙임 : 충청북도 주민자치활동 지원 조례안 1부. 끝.

참고자료

광역시도 주민자치활동 지원 조례안 현황

구분	조례명	공포일자
인천광역시	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	2014. 4.13
광주광역시	광주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	2015.10. 1
강원도	강원도 주민자치 지원 활성화 조례	2015.12.31

※ 특별자치시도인 세종시, 제주도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.

# 주민자치센터 설치 현황

(2014.1.1기준)

시도	주민자치센터 설치 읍면동 수				명칭사용실태(단위: 개소)						
	계	읍	면	동	계	주민 자치 센터	자치 회관	주민 자치회	자치 센터	주민 회관	기타 개소 (명칭)
계	2765	144	632	1989	2765	2117	406	203	0	1	38
서울	423	0	0	423	423	22	397	2	0	0	2
부산	210	2	3	205	210	28	0	182	0	0	0
대구	132	1	1	130	132	132	0	0	0	0	0
인천	147	1	19	127	147	147	0	0	0	0	0
광주	95	0	0	95	95	94	0	1	0	0	0
대전	78	0	0	78	78	65	0	1	0	0	12
울산	56	4	8	44	56	55	0	1	0	0	0
세종	11	1	9	1	11	11	0	0	0	0	0
경기	532	30	100	402	532	510	8	6	0	0	8
강원	106	9	30	67	106	104	0	2	0	0	0
충북	153	15	87	51	153	152	0	1	0	0	0
충남	175	20	118	37	175	174	1	0	0	0	0
전북	193	9	104	80	193	176	0	2	0	1	14
전남	158	19	72	67	158	154	0	2	0	0	2
경북	70	14	23	33	70	69	0	1	0	0	0
경남	183	12	53	118	183	181	0	2	0	0	0
제주	43	7	5	31	43	43	0	0	0	0	0

※ 자료출처: 행정자치부